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근해어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척추진을 위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기간 단축 (안 제3조제4항)

정부는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기간이 현행 120일(4개월)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매년 감척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연근해어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척추진을 위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 기간을 단축(60일)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 ~ 4.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0일”을 “6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시·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일 <u>120일</u> 전까지 알려야 한다. 1. ~ 4. (생략) ⑤ ~ ⑦ (생략)	제3조(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u>60일</u> -----.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17